



직인생략

문서번호 : 한강 제2016-10호

2016. 02. 16

수 신 : 회원제위, 특별회원

제 목 : 2016년도 한국강구조학회 학회상 수상후보자 추천의뢰

1. 귀하(사)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.

2. 본 학회 운영규칙 제5장 포상 및 포상규정 제2장에 의거 2016년도 학회상 수상 후보자를 귀하(사)에게 추천의뢰 하오니 아래 시상 부문별(논문상 제외)로 적격회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단, 수상후보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1) 서류제출일 : 2016년 3월 14일 (월) 17:00 한
- 2) 제 출 처 : 사무국
- 3) 학회상 종류
 - ① 특별공로상 ② 공로상 ③ 학술상 ④ 기술상 ⑤ 작품상
- 4) 제출서류 : ① 추천서 1통 ② 약력서 1통
- 5) 시 상 : 2016년 6월 10일(금)
정기총회(여수 · 디오션 리조트)
- 6) 상 품 : 상패

- 이 상 -

- 첨 부 : 1. 추천서 및 약력서 양식 1부.
2. 운영규칙 1부
3. 포상규정 1부

(사)한국강구조학회장

추천서

2016년도 학회상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.

부 문 별 :

성 명 :

소 속 :

공적 및 추천이유 :

단체 또는 기업체 추천

단 체 명 :

대 표 자 :

또는

개인추천(정회원 10인 이상 공동추천)

추 천 인 : 1.

인

2.

인

3.

인

4.

인

5.

인

6.

인

7.

인

8.

인

9.

인

10.

인

2016. . .

(사) 한국강구조학회 귀중

약 력 서

1. 주 요 학 력 :

2. 주 요 경 력 :

3. 주 요 실 적 (연구, 기술개발, 작품, 저서 등) :

운 영 규 칙

제5장 포 상

제15조(특별공로상) 본 학회 또는 강구조분야의 발전에 특별히 뛰어난 공헌을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제16조(공로상) 본 학회 또는 강구조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공로상을 포상할 수 있다.

제17조(학술상) 강구조공학 분야에 뛰어나게 학술적으로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학술상을 포상할 수 있다.

제18조(논문상) 본 학회의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전 2년 이내에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에 발표된 논문중 강구조공학 분야에 뛰어나게 공헌한 논문을 발표한 회원에 대하여 논문상을 포상할 수 있다.

제19조(기술상) 강구조공학 기술의 향상 또는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기술상을 포상할 수 있다.

제20조(작품상) 본 학회의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전 2년 이내에 완공된 특히 우수한 강구조물을 설계 또는 시공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제21조(특별상) 본 학회는 위의 학회상 이외에 개인 또는 법인의 기탁금에 의거한 특별상을 포상할 수 있다,

포 상 규 정

(1990년 5월 16일 제정)

(2002년 4월 24일 개정)

(2012년 1월 11일 개정)

(2014년 3월 19일 개정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한국강구조학회 정관 제4조 제9호에 따라 정해진 본 학회 운영규칙 제5장의 학회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수상후보자의 추천

제2조(수상후보자의 자격)

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(1) 본 학회 정회원 10명 이상이 공동으로 추천한자
- (2) 공인된 학술 및 기술단체 또는 강구조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
- (3)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

제3조(추천 접수기한)

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수시로 접수하되 매년 3월 15일에 이를 마감한다.

제4조(추천서류)

1.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(1) 추천 이유서 1통
- (2) 피 추천자의 이력서 1통
- (3) 피 추천자의 사진(명함판)1매
- (4) 피 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(저서,논문,작품 등은 각2부)

2.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단, 전항 제 4호의 증빙자료는 피 추천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.

제 3 장 수상자의 선정

제5조(학회상 심사위원회)

1. 수상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 강구조학회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운영담당 부회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3. 위원장 이외의 심사위원은 매년 본 학회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
4. 심사위원회는 상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수상예정자의 확정절차)

1. 학회상 심사위원회는 상별로 수상예정자를 선정한 후 이들을 학회장에게 추천한다.
2. 학회상 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예정자는 본 학회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.

제7조 (학회상 심사위원회의 운영)

1. 위원장은 심사에 관한 임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수상예정자의 결정은 제 4항에 따른다.
3. 심사는 추천 시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자료를 수상후보자 또는 그 추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4. 수상예정자의 결정은 재적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5.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중요의결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한다.

제4장 포 상

제8조(포상일)

상의 포상은 매년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.

제9조 (상의 수여)

1. 학회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.
2. 수상자가 수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을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을 취소한다.

부 칙

1.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토론, 심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며 발표하지 아니한다. 단, 심사위원회 결의로써 심사위원 이외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2. 수상자에 대한 여하한 항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.
3. 수상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정기총회 개최 공고 시에 발표 한다.
4. 본 규정은 199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5. 1990년도 포상은 본 규정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